



괴롭히기 행위에 관한

지휘관 정책 지침서



헤이징 (hazing, 괴롭히기 행위)이란 관등에 상관없이 한명의 군인이나 민간인이 다른 군인이나 민간인에게 잔인하고 학대적이며 모멸감을 주고, 억압적이며 비하하거나 해로운 행위를 초래하거나 이러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행위에 동참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또한 헤이징으로 간주됩니다. 헤이징은 서로간에 반드시 물리적인 접촉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언어적이거나 심리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헤이징 행위에 실제적인 동의나 묵시적인 동의만 하였다하더라도 가해자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헤이징 행위에는 승인되지 않은 "통과 의식" 또는 "축하의 행위", 감독되는 훈련이외에 고통을 주기위해 다른사람을 물리적으로 가혹하는 행위,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의 피부를 찌르는 학대 행위(pinching); 모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언어폭력; 음식, 술, 약이나 기타 다른 물질을 강압적으로 먹이는 행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육체 훈련을 시키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든 헤이징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헤이징 행위는 우리의 제도적 핵심 가치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부대의 결집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고, 우리의 전문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킵니다. 본인은 캠프무적 구성원간 그 어떤 헤이징 행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성원은 전문성, 단결력, 동료애 및 팀웍으로 조직의 풍토를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 및 감독자는 해병대 명령 1700.28B 에 나와있는 헤이징 행위 관련 부분을 숙지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군인도 헤이징 행위에 동참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자행되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됩니다. 헤이징 행위에 동의하는 것은 방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휘관으로서 모든 직원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존엄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은 헤이징 행위가 의심되거나 주장되는 모든 신고된 건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실제로 발생했다면 관련 당사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미 해병대 명령 5354.1E 을 어기는 그 어떤 위반 행위나 위반시도 행위 또는 위반을 권유하는 행위등은 군법에 의거 행정 및 징계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헤이징 행위와의 전쟁에서 부대 구성원 한명 한명이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보복을 두려워하지말고 헤이징 행위를 신고하고 시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각 구성원의 책임입니다. 이를 수행하기위한 몇 가지 방법이 다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지휘체계를 통해 보고하십시오. 직속 상사가 관련된 경우, 저에게 바로 도움을 청하십시오.
- 미해병대 태평양기지사령부-버틀러기지 감찰관에게 315-645-7346 / 3267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 미해병대본부 감찰관에게 703-604-4526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 미해병대 본부 웹사이트 (www.hqmc.usmc.mil)에 나와있는감찰관(Inspector General) 링크에 연결된 직통절차(Hotline Procedures)를 활용하십시오.

언제나 충성을,

세코우 에스. 커레가

미합중국 해병대 대령

캠프무적 부대장